

## 4. 租稅減免規制法施行規則中 改正令

財務部令 第1,876號 1992. 3. 3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4조제2호 및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이자 또는 배당금은 영 제2조제2항각호에 규정된 예탁금의 이자 또는 출자금의 배당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통장(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통장”이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으로 한다.

1. 통장의 명칭에 “비과세예탁금종합통장” 또는 “비과세출자금통장”임이 표시되고 기타 통장의 기재사항에 통장번호와 가입자(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일 것.

2.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당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실명으로 비과

세예탁금종합통장과 비과세출자금통장에 각각 가입할 수 있는 것일 것.

3. 당해 통장에 의한 거래금액의 한도가 예탁금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이고 출자금의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인 것일 것.

②동일인이 같은 종류의 비과세통장에 둘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최초로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통장으로 본다.

③비과세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예탁금 또는 출자금이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날이후부터는 이를 비과세통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비과세통장을 취급하는 기관은 통장을 개설하거나 해지등을 한 것에 대하여 반기별로 반기종료 다음달의 말일까지 별지 제13-3호서식의 비과세예탁금·출자금명세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비과세통장제도의 운용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 1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800만원 한도내에서”를 각각 “영 제2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금액 한도안에서”로 하고, 동항제4호중 “800만원”을 “영 제2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금액”으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저 축 상 품
5.세금우대 증권금융 종합통장	1인당 영 제2조의2제1항제1호 나목의 금액 한도안에서 증권 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 에서 취급하는 공무주청약예 치금을 종합거래할 수 있는 통 장

제 1조의4제1항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800만원”을 “영 제2조의3제2항제3호의 금액”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800만원이내인 것”을 “영 제2조의3제2항제3호의 금액이내인 것”으로, “800만원을 초과하는”을 “영 제2조의3제2항제3호의 금액을 초과하는”으로 한다.

6.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

제 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별표6중 1. 기술개발란의 가목중 ①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주주인 임원을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제 6조제9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목의 기관에 품질관리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위탁훈련비와 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가.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나. 공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업표준협회

다.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라.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마. 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제6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영 별표6중 2. 인력개발란의 마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2. 직업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직업훈련용 기자재·장비·시설의 임차비용

4. 국내전문연구기관에의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문비

제12조의4 및 제1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영 제35조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1조에 규정된 1급자동차 정비업 및 2급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한다.

제13조의2(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36조제6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면적을 말한다.

1. 제조공장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의 공장입지기준면적
2.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에 규정된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당해 사업의 허가 당시 관계법령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의 1.1배에 해당하는 면적중 큰 면적

제15조제1항중 “영 제47조제3항”을 “영 제47조제3항·영 제48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영 제50조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영 제50조제6항”을 “영 제50조제6항”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의 범위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의3을 제17조의4로 하고,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대전세계박람회용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영 제44조의4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을 말한다.

1. 기계장치
2.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3. 전시용 영상장치·조명장치 및 전기음향기기
4. 자기부상열차·궤도차 및 그 관련설비
5. 기타 박람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고정자산 및 그 부속설비

제17조의4(종전의 제17조의3) 제1항중 “영 제45조제5항제7호에서”를 “영 제45조제5항제8호에서”로 하고, 동조제4항중 “영 제4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45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중 “영 제50조제5항에 규정하는”을 “영 제50조제7항에 규정된”으로, “주택건설등록업자”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로 하고, 동

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항제3호중 “주택건설기준에 관한규칙”을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규정”으로, “녹지시설”을 “녹지시설·근린공공시설”로 하고,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2항에 규정된 공공시설용지비율과 국민주택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단위사업 계획별로 계산하되, 영 제5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일까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신청하는 비율에 의한다. 다만, 사원용주택건설자가 주택건설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신청하는 비율에 의한다. 다만, 사원용주택건설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이 아닌 사원용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원용주택건설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신청하는 비율에 의한다.

제19조제6항중 “제4항 후단의 경우에 주택건설등록업자가”를 “제4항본문후단의 경우에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가”로 하고, 동조제7항중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을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의 납세지소관 세무서장”으로 “영 제50조제8항에 규정하는”을 “영 제50조

제10항에 규정된”으로,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로부터”로 한다.

제20조2제1항제2호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내지 제21호”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내지 제22호”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건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와 동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2호에 규정된 토지

제20조의7제목중 “5년이상”을 “10년이상”으로 한다.

제20조의8제목중 “2년이상”을 “5년이상”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공·준공 및 사업개시”를 “준공·취득 및 사업개시”로, “시공일 또는 준공일이 경과된 날부터”를 “준공일 또는 취득일이 경과된 날부터”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55조의10제6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제13조의2각호에 규정된 면적을 말한다.

제20조의9제목중 “2년이상”을 “5년이상”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동조 제2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전의 제1항)중 “법 별표 제34호 내지 제36호의 법인이 소유하는”을 “법 별표 제34호 내지 제36호 및 제40호의 법인과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발조합 및 동조합연합회가 소유하는”으로 한다.

①영 제55조의11제1항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제13조의2각호에 규정된 면적을 말한다.

제20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13(가업의 범위) 영 제55조의8제1항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을 말한다.

제21조제9항중 “영 제57조제3항에서”를 “영 제57조제3항 및 영 제57조의2제1항제2호에서”로 하여 이를 동조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영 제57조제1항제6호의2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별표 10의 첨단기술설비를 말한다.

제21조의2제1항중 “영 제57조의3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계획서”를 “영 제57조의3제3항제1호 및 영 제57조

의1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계획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57조의3제3항제2호 및 영 제57조의12제2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제1호 및 동조제5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57조의10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준비금명세서 및 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 법 제88조의2 및 법 제8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의 환급세액은 당해 기속사가 준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감면세액으로 본다.

[별표 2] 에너지절약시설중 제2호다목에 (1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제4호중 “기존시설을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이상의 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를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이상의 것으로서”로 한다.

구분	설비내용	적 용 대 상
	(15)축냉 방식의 열원장치	축냉(빙축열 또는 수축열)방식의 냉방 또는 냉장설비로서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30킬로와트 이상의 것(이것과 함께 설치하는 전용배관펌프·열교환기 및 축열조를 포함한다)

[별표 3] 공해방지시설중 제목 “공해방지시설”을 “공해방지시설(그 시설 및 공해물질의 배출시설에 부착된 측정시설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표제1호의 구분란중 “탈유황장치, 집진시설 및 폐가스처리시설”을 “집진시설·폐가스처리시설 및 비산먼지역제시설”로 하며, 동호의 적용범위란중 “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오염물질”을 “오염물질 및 비산먼지”로 하고, 동표제2호의 적용범위란중 “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하며, 동표제3호의 적용범위란중 “환경보전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하고, 동표제4호의 구분란중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로 하며, 동호의 적용범위란중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로 하고, 동표에 제6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적 용 범 위
6.탈황시설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속에 함유된 황을 제거 또는 저감시키는 시설

[별표 4] 산업재해예방시설중 제10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분진제거를 위한 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장치 및 제진·집진장치

다. 유기용제·특정화학물질 기타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전체환기장치·국소배기장치 및 공기정화장치

[별표 4] 산업재해예방시설중 제16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압력방출장치 및 누출방지장치  
사. 역화방지기(프레임 어레스터)

[별표 4] 산업재해예방시설중 제17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자동원치

[별표 4] 산업재해예방시설중 제18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화학설비공장등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기기·배선 및 공구와 폭발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격벽

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원심주조

기·원심분쇄기 및 원심혼합기등에

설치된 덮개 또는 인터록 장치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을)] 및 [별지 제35호서

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

13-3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 및 [별

지 제3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제 2 조(기술·인력개발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

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제 3 조(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

례) 제20조의2제1항·제20조의3제1항

및 제20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

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 4 조(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9항·별표2, 별표3중 제목 및

제1호, 별표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

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1992년 1월 1일 이후 이 규칙 시행전에

제21조제9항·별표2, 별표3중 제목 및

제1호, 별표4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투

자를 한 것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부터 3

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규칙이 개정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한 것으로 보아

제21조제9항·별표2, 별표3중 제목 및

제1호, 별표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 개정 이유 □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1991. 12. 27 법률 제4,451호)과 동법시행령의 개정(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에 따라 개정된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 골자 □

- 가.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100분의 5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국·공채의 범위에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을 포함하도록 함(제1조의4제1항제6호)
- 나. 연구요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그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는 바, 이 경우에 학사학위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연구요원등으로 하였던 연구요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없앴(제6조제2항)
- 다.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1급자동차정비업 및 2급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으로 함(제12조의4).
- 라. 대전세계박람회용 고정자산으로서 취득연도에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감가상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박람회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등으로 정함(제17조의3).
- 마.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특정설비중 생산성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의 범위를 정함(제21조제9항 및 별표10).
- 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인정해주는 대상 기계장치의 범위를 공정의 개선이나 자동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로 함(제21조제10항).  
〈재무부 제공〉